토론회

서비스산업활성화, 가능한가?

| 일 시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1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회 순

- 사 회

  - 김 영 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주제 발표

  - 김 광 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김 민 선 (투이컨설팅 이사)

  - 김 종 현 ((주)위세아이텍 대표이사)

- 질의·응답

- 폐 회

목 차

▪ 발 제 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가능한가?
: 김 광 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문

: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평가와 과제
: 김 민 선 (투이컨설팅 이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김 종 현 ((주)위세아이텍 대표이사)

<정책토론회> 서비스산업 활성화, 가능한가?

주제발표

[주제발표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가능한가?

김 광 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I. 주제발제를 시작하면서

경영학자로서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취업을 하려해도 일자리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한 우리 손자들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분명 누군가가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국가 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고,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큰 변화를 겪어야할 우리 손자세대들을 위하여 더 이상의 방관은 죄악이라는 마음에서 본 주제의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확산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률 및 비정규직의 증가와 소득감소, 그에 따른 경기하향 등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누구나 알고 있듯이 거대한 중국 및 많은 개발도상국의 등장으로 자본과 값싼 인력중심의 제조산업의 경쟁력이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미 조선,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처럼 그 조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측하고 있던 것으로 그 해결방안 중의 하나가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모두 다 동감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편중, 특히 재벌중심의 산업성장과 다양한 전문직종 기득권층의 집단이익 추구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성 침해 또는 재벌특혜 같은 용어가 나오면 일단 그 내용의 진위여부나 사안의 중요성 등은 자세히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서 많은 사회적 리더 등이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사회, 경제 문제가 예견되고 있고 다양한 토의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10년 내에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더 부의 편중화가 심화 될 것이라는 엄청난 사회, 경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와 보수적 관점에서 토의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는 이렇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반드시 고민하여 해결해야 할 이슈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대비 다양한 주장들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보기위한 위한 사전 연습이기도 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본 발제자는 먼저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사회단체 및 이익단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 및 주요이슈를 정리한 후에 그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어떻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 방안을 도출하여 보고자 합니다.

II.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서비스산업의 발전 필요성

<그림 1> 연도별,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비중(부가가치, 고용)

<자료 : OECD STAN,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 총종사자 대비, 총부가가치 대비>

<그림 1>에서 보듯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이미 대세로 많은 선진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맞춤형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은 이제 대세이며, 다양한 지능형 기술의 활용은 현재의 서비스산업을 융복합화, 신규 서비스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거의 모든 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재분류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한 국가의 발전과 거의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림 2> 주요국가의 서비스산업 비중(부가가치,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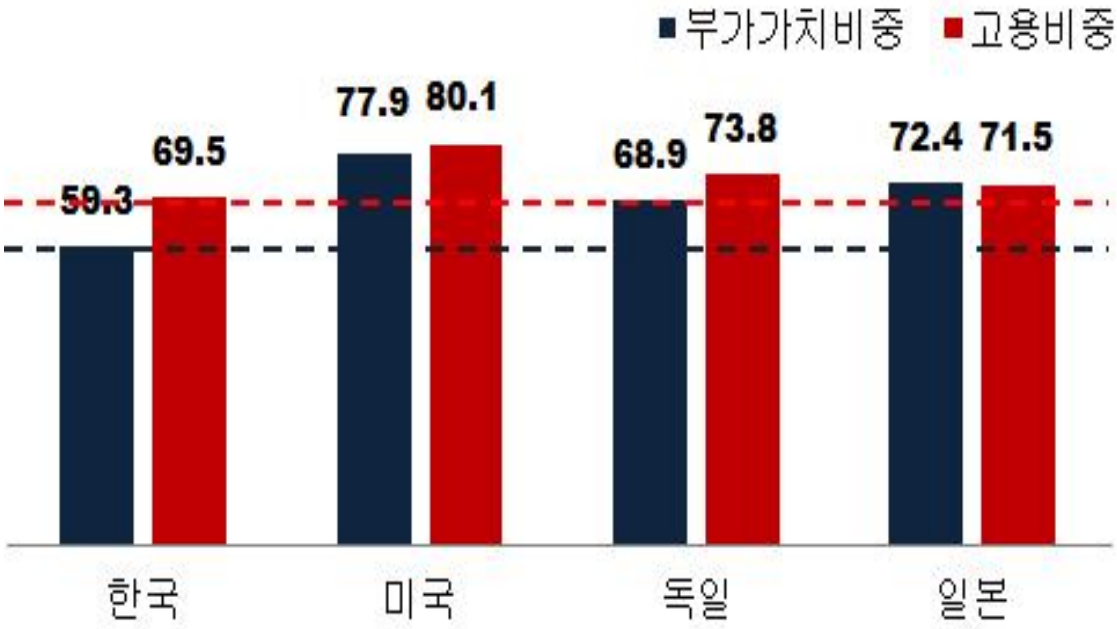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그림 2>에서 보듯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대비 약 10% 정도가 낮으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이며 의료,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산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제조산업의 취업을 꺼리는 젊은 구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노력

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후진국을 제외하고 제조산업의 비중이 줄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2010년 29% → 2014년 30%).

<그림 3> 한국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문제점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 생산자서비스: 법률, 회계, 광고, 디자인, 연구개발, 금융, 부동산 등
- 사회서비스: 의료, 복지, 공공행정, 교육 등
- 유통서비스: 도소매, 운수, 물류, 창고, 정보통신 등
- 소비자서비스: 음식, 숙박, 문화오락, 세탁 등

<그림 3>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분류표를 개념적으로 재정리한 도표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가 낮은 유통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에 가장 많은 비중이 있으며, 고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의 음식, 숙박 중심의 소비자 서비스는 저가경쟁에 의한 고부가가치가 없고, 도소매, 운수 등의 유통서비스는 과잉진입에 의하여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법률, 회계 등 생산자 서비스는 다양한 규제에 의한 경쟁이 제한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며,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논란과 집단이기주의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소비자와 유통 중심에서 생산자,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옮기면서 전체 서비스산업의 규모를 키워야만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노력중의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기업의 경우 단기성과에 만족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국가는 서비스산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소홀히 하면서 신규서비스업의 창출과 다양한 융복합화 서비스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현재의 저성장 기조로 빠져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이슈는 이미 늦은 측면이 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관점에서 이 이슈를 재조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는 이미 대세로 이제 그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동력을 잃어 저성장을 넘어 중산층이 붕괴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III.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추진배경에는 제조와 서비스업간의 융합, 서비스업종 내에서의 융합, 새로운 신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기존 산업 특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부처 간 정책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가 많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범정부적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초연결 지능형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바 현재 제조, 서비스업의 융합과 다양한 신산업의 도래가 가속화되어 국가적 차원의 유연하고 발빠른 대응이 매우 절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법안의 주요내용

<표 1>에서 보듯이 서비스산업발전법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보면 국가의 서비스업 발전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서 5년 단위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하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제9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총 30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주요내용

규제개선 및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제13조에서 원격의료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을 명시하고, R&D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 R&D의 개념정리와 우수 R&D 인증제도 도입을 제14조에서, 제18조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서비스 활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창업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제20조에서 22조에 걸쳐 재정, 금융지원 등의 차별적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전문인력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특성화교육기관은 제23조에서 전문연구센터는 제2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IV.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한 주요이슈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18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다시 20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및 많은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문제점은 여러 이슈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 제2조에서 서비스업의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둘째, 법안 제11조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위원도 정부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 침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법안 제23조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제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의료를 영리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혜택에 대한 차별성이 발생하고 의료비용 지출도 오를 소지가 높으며, 결국 재벌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IV.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는 정부나 반대하는 시민단체 또는 이익단체의 의견은 다 일정 논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장점과 문제점이 항상 공존하고 완벽한 것은 없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꾸준히 감시하고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은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고, 향후 거의 모든 산업이 서비스화로 융합되고 전환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지는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하는 첫 번째 주장으로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사회 공공서비스에 시장이나 산업논리가 적용되지 않아 생긴 부작용을 검토하여 봅시다. 발제자가 몸담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 하에 수많은 규제가 시행된 지금 세계 경쟁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성을 위하여 시행한 많은 교육정책 하에서 그 많은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 누가 짊어지고 있나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금 받고 있는 상당수의 교육은 다 쓸모없을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교육부가 주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산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하게 시장논리 하나 도입하면 됩니다. 교육시장의 글로벌 개방정책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교육은 공공서비스라고 보고 시장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에 약간 흉내는 내고 있지만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하지 않아 진정한 경쟁구도에 해외교육기관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굳이 힘들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해외대학에 대한민국 교육시장을 개방하면 지금처럼 프라임 사업 등 무리한 정책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문닫겠다고 하는 대학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가 할 일이 거의 없어져 상당수의 교육부 공무원들이 필요없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혜택은 많은 시민들이 보게 되겠지요.

시민단체들이 문제 많은 미국의 예를 들지 말라 하니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경제발전이 늦은 베트남을 예로 들겠습니다, 발제자는 베트남에 국내최초로 국내대학의 해외 MBA를 성사시켜 지금도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마다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대학교육을 개방하여 우리대학 말고도 인도, 대만, 벨기에 대학들과 이미 MBA를 하고 있었고 매년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합니다. 어떻게 좋은 강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러나 시장논리, 산업논리가 가미되면 마치 모든 공공성이 훼손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충분히 감시하고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방송, 교육, 의료 산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융복합화되면서 기존 산업의 경계선이 모호한 시대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 산업 지키기, 내 식구 감싸기 등의 집단이기주의는 단기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적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의료나 교육 분야 기존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대한 저항과 공공성 가치의 훼손이라는 것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미래 비전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주장으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위 주체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 독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파고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나 서비스업의 분류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고, 다양한 신서비스산업이 창출되고, 기존의 직업은 700만개나 없어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대에서 기존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각 부처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씽크탱크가 참여해서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구도 하에서 별도의 예산과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부처를 만들지 않는 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아닐까요?

기획재정부도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량 실업 및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 국민 통합절차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면 이번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위원의 역할과 구성을 재정의하여 많은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게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단순예상으로 기업의 법인세도 40%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실업수당도 취업한 사람과 큰 차이없는 경제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다시말해 기존 자본주의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둘 정도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존망이 흔들거릴 것이고 이 과정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위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하는 세 번째 주장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적용으로 환자정보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핵심은 원격진료와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 건이라고 봅니다. 실제 최근에 의료 관광객이 2009년 6만 명에서 2013년 21만 명으로 연평균 37%가 급증하였고, 서울대학 병원이 중동에 1조원대의 병원 위탁경영을 수주하는 등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자금의 병원 유입금지에 따라 외국환자용 병동 건립이 어려워지고 탈세나 저질 브로커 등에 의한 의료관광 등을 이용한 외국환자 유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러라도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해외수출전략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이것이 성공하여 서비스 수출의 성장과실이 있으면 국내 의료 소비격차에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국민 간 소비격차해소의 사전 준비용으로 반대보다는 적극 지원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환자정보 보호침해 우려 가능성은 맞는 말이나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oT, 클라우딩 서비스를 기본으로 초연결사회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은 핵심 화두입니다. 물론 환자정보는 사생활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할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보다는 사회의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별도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입법화해야 하는 별도의 논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진료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받아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미 암환자 진단에서 컴퓨터가 인간 의사의 능력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것은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산업지키기를 향한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를 영리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혜택에 대한 차별성이 발생하고 의료비용 지출도 오를 소지가 높으며 결국 재벌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한 핵심이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상당 부분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발제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파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 병원 가는 것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아프면 언제든지 쉽게 병원 가는 것과 대중교통의 편리함이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토의와 논의의 결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하여 개별법 우선적용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으로 의료정책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의 경우 법통과 후에 계속 감시활동을 하여 그럴 개연성이 보이면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의료분야의 공공성 침해 가능성만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과정에서 이 의료분야만을 제외하여 추진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각종 재정, 세제, R&D, 해외진출 등의 여러 지원 혜택에서 빠져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의료보건 서비스 분야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가장 발전 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다시 말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서비스산업중의 하나입니다. 서비스산업 중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관광서비스 등과 함께 해외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 서비스산업으로 공공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할 분야입니다. 이러한 수출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의료분야가 정착되면 서비스수출의 성장과실을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공공성 침해분야에 대한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수출을 주도하는 주체는 결국 자본이 풍부한 재벌에 대한 혜택이라는 주장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고 투자하지 않은 재벌보다 새로운 신서비스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 재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조업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후손들에게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사회의 기둥으로 많은 역할을 해온 전문직종의 변호사, 의사, 교육자, 공무원 등이 집단이기주의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회 및 경제 변화의 선두에 설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진보 대 보수의 정치적 이슈도, 재벌 대 서민이라는 경제적 이슈도 현재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대변혁의 시기에는 그리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 산업, 정보화 사회로

의 전환에서 성공하였던 국민의 역량을 다시 살리되 과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정의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역량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토론회> 서비스산업 활성화, 가능한가?

토 론

[토　론①]

서비스산업활성화, 가능한가?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63개)

- 농림어업 (3): 01 농업 02 임업 05 어업

- 광업 (3):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제조업 (23):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전기가스수도건설 (4):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서비스 (30):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55 숙박 및 음식점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 교육 서비스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

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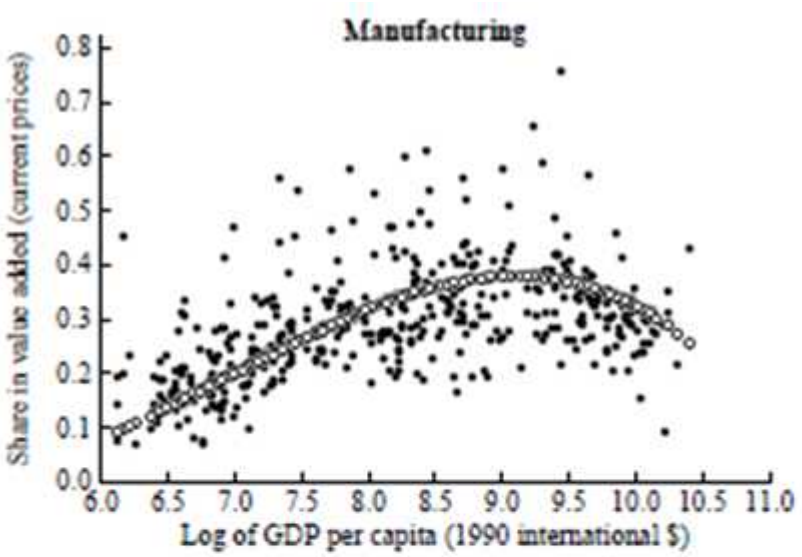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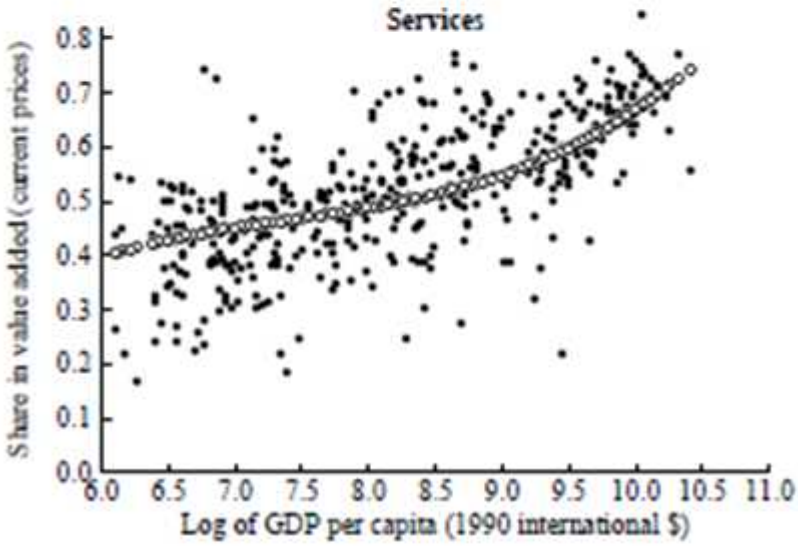

<출처: Herendorf et al (2013)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 선진국 경험으로부터 정형화된 사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정점에 접근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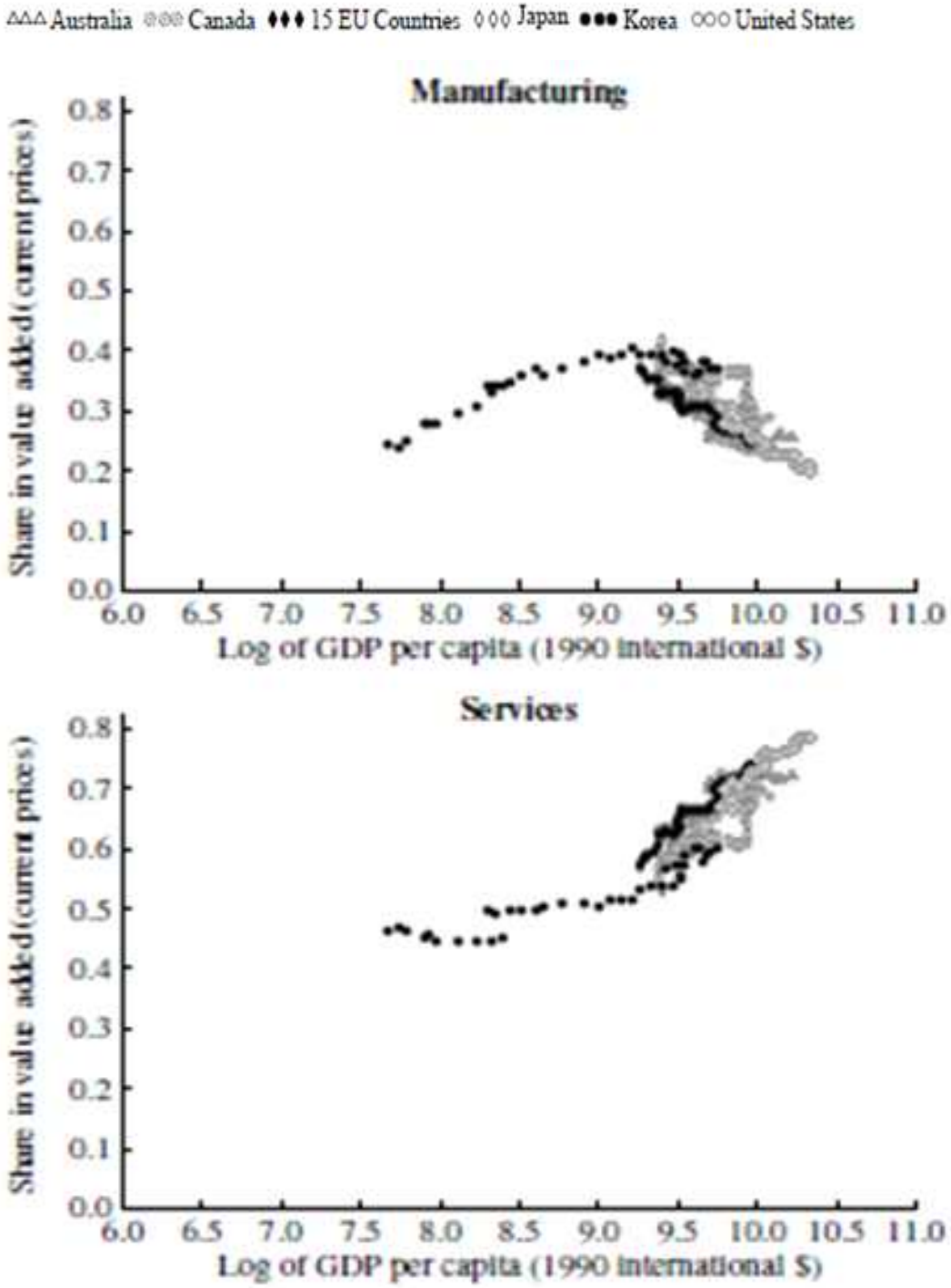

[표 1]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비율 (GDP대비 부가가치 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농수산	31.4 (18.6)	22.7 (13.7)	16.1 (9.6)	11.9 (6.7)	10.7 (5.2)	8.0 (3.7)
광업	0.9 (1.8)	1.0 (1.4)	0.4 (0.9)	0.1 (0.6)	0.1 (0.4)	0.1 (0.3)
제조업	22.9 (24.3)	24.5 (27.2)	**28.2** (28.3)	23.8 (27.7)	20.5 (**29.5**)	18.7 (29.2)
전기가스수도	0.3 (2.0)	0.3 (3.0)	0.4 (2.3)	0.3 (2.1)	0.3 (2.6)	0.3 (2.4)
건설	6.5 (8.2)	6.3 (7.5)	7.6 (10.1)	9.5 (11.9)	7.5 (9.0)	8.0 (9.5)
서비스	38.0 (45.0)	45.1 (46.9)	47.3 (48.7)	54.3 (50.8)	60.9 (53.1)	**65.0** (54.6)

<출처: Kim and Oh (2015)>

[표 2] 우리나라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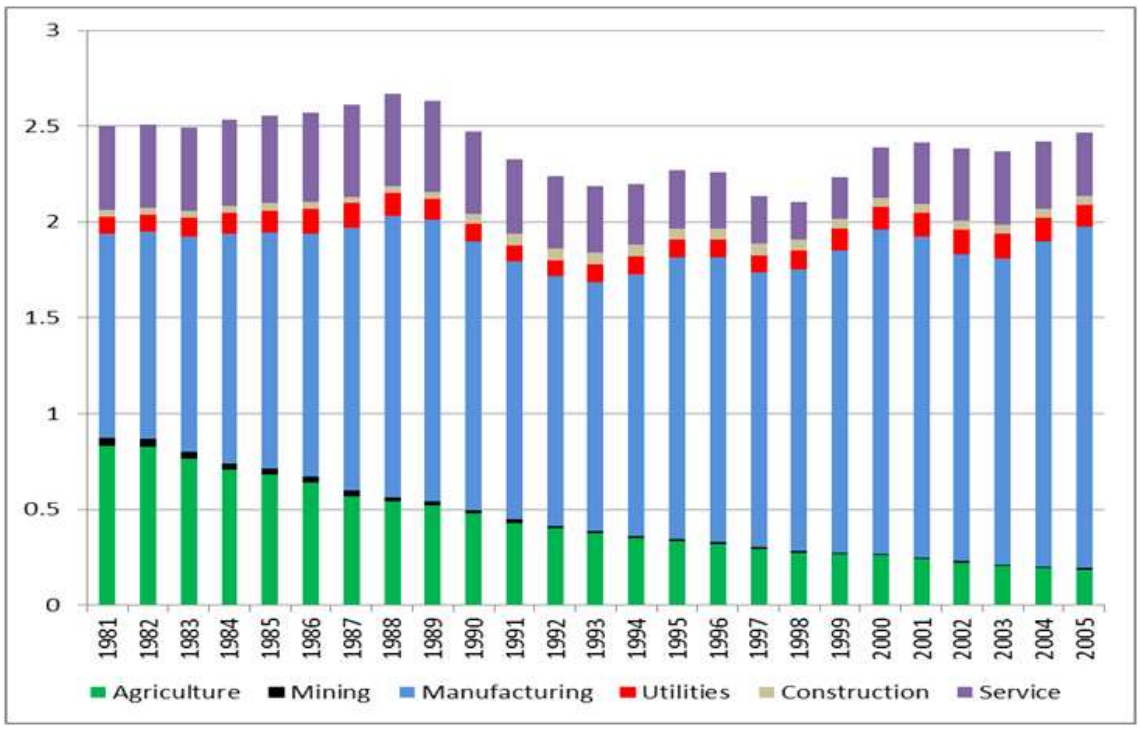

<출처: Kim and Oh (2015)>

2000년부터 비로소 서비스업이 농림어업을 추월

[표 3] 우리나라 고용 현황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 (%)	무급가족종사 (%)	취업인구(1000명)
2007.8월	43.4	24.3	26.1	6.2	23,458
2008.8월	45.1	23.1	25.6	6.3	23,616
2009.8월	45.4	24.4	24.4	5.8	23,620
2010.8월	47.3	23.7	23.4	5.5	24,005
2011.8월	47.0	24.5	23.2	5.3	24,495
2012.8월	47.6	23.8	23.3	5.3	24,859
2013.8월	48.6	23.5	22.7	5.2	25,292
2015.8월	49.9	24.0	21.5	4.6	26,141

<출처: 통계청>

[표 4] OECD 주요국 총고용 대비 자영업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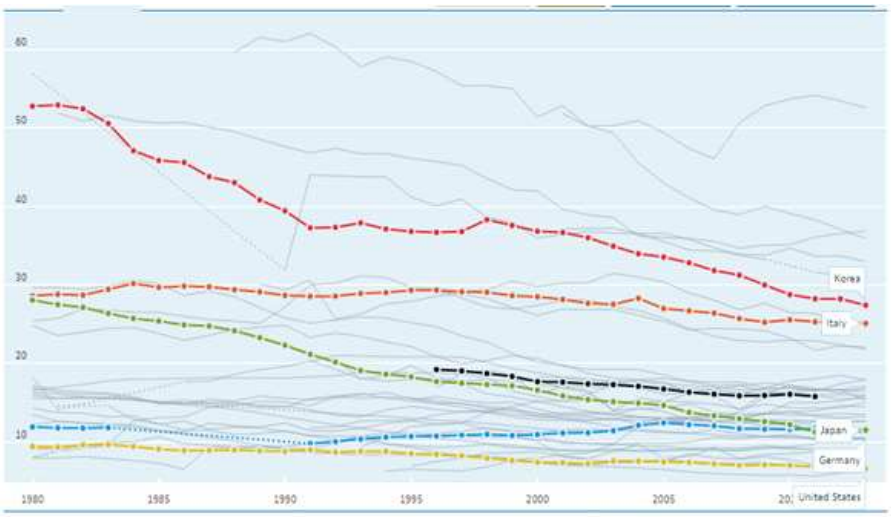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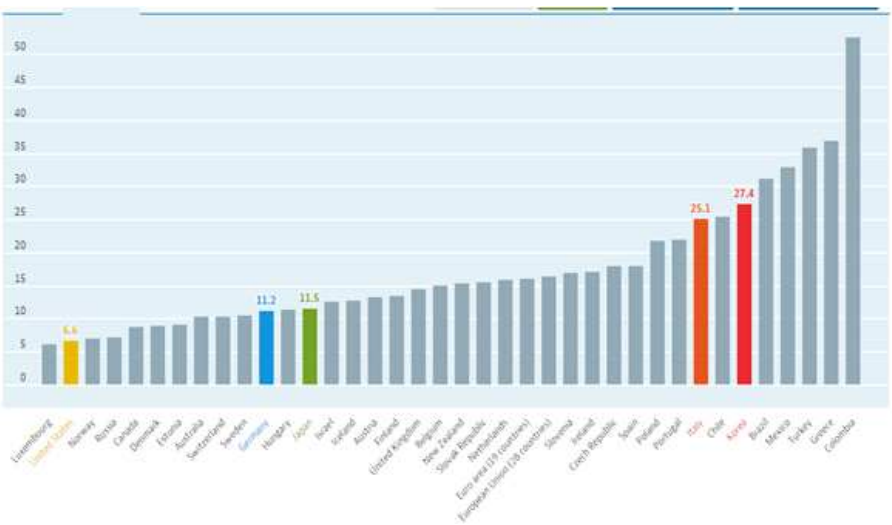

<출처:OECD>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평가와 과제

김 민 선
투이컨설팅 이사

I. 토론을 시작하면서

17년째 IT업계에 종사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직·간접적으로 두루 경험해왔으나 주로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들을 해왔고, 14년도 말부터 E-헬스협의회, 핀테크협의회 등의 정책/전략 관련한 포럼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료 및 금융 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체계가 지닌 한계점들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등의 국가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국가가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지만 산업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갖춤으로써 하나의 국가 산업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게 성장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눈앞에 지켜보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 왔습니다.
우연찮게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련토론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겼고 4차 산업혁명과 IT서비스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서비스산업발전법 주요내용 및 쟁점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18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다시 20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으로, 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은 김광용 교수님께서 주제발제문에 제시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
-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
- 국회의 입법권 침해, 행정 독재의 위험성
-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 규제 완화, 환자 정보보호의 침해 가능성
- 의료차별 및 의료비용 증대, 의료산업진출 재벌기업 특혜

III.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제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쟁점사항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처에 대한 김광용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우선 밝힙니다. 다음과 같이 각 쟁점사안별로 발제자님 의견에 대한 추가 제언을 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첫 번째 반대 주장인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제언입니다. 더 이상의 집단이기주의는 단기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적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공공성 가치의 훼손이라는 것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국가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김광용 교수님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의료계, 금융계, 교육계, 법조계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기득권층은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쌓아온 업적과 유리한 입지가 박탈될 것으로 여기거나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새로운 침입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들 업계들이 그 동안 좋은 대우와 마치 무슨 우월한 지위나 신분에 해당하는 것처럼 관과 법의 비호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그런 사회적 강자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약자입니까?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이 많아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고통분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내 일자리 줄고, 내 수입 줄 것 같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재고해야할 대상입니다.

지키려고 아무리 애쓴다한들 발전하는 IT 기술로 인해 기존의 직종과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비단 의료, 금융 산업분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이슈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것에 대행하여 기존의 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흐름을 타고 기존의 업을 변화시켜 새 시대에 준비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기득권층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 자녀 세대 또한 고급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인적네트워크도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새 시대에 적응하는 저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두 번째 반대 주장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위 주체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행정 독재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제언입니다.

일부러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씽크탱크가 참여해서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준비해야 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위원의 역할과 구성을 재정의하여 많은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게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광용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그 중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적합 여부에는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추진 방식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일해 온 방식대로제언을 드려본다면, 각 정부 및 유관 중앙행정기관 별로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기보다는 부처를 아우르는 TF팀을 발족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서비스산업의 미래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별 세부 과제 및 액션아이템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별로 산발적인 과제보다는 빅픽쳐 내에서 서로 정련된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제언드리며 그 컨트롤타워가 국가산업의 미래를 책임감 있게 리딩할 수 있는 부처 혹은 기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 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세 번째 반대 주장인 보건의료분야의 국외진출규제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보건의료분야 확대적용에 따른 환자정보보호의 침해 위험성에 대한 추가 제언입니다.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해외수출전략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이것이 성공하여 서비스 수출의 성장과실이 있으면 국내 의료 소비격차에 활용하면 된다는 김광용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환자정보는 사생활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할 정보이나 이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보다는 사회의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검토하고 입법화해야 하는 별도의 토픽이라는 지적과 4차 산업혁명을 맞는 현 상황에서원격진료는 이미 거부할수 없는 이슈라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국내 규제들은 진작부터 완화되고 해지되었어야 마땅하며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또한 이는 비단 의료분야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금융, 콘텐츠 등 산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 보다는 규제를 푸는 것을 기조로 하여 규제 완

화로 인해 발생 예상되는 추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해법을 찾아 풀어가는/제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쟁점사항인 의료영리화에 의한 국민 간 의료혜택의 차별, 의료비용 지출증대, 의료진출 재벌기업에 대한 혜택 우려에 대한 추가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건 서비스 분야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서비스산업중의 하나이며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관광서비스 등과 함께 해외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 서비스산업으로 공공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할 분야라는 김광용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본이 풍부한 재벌기업이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보다 큰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유발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국내 재벌기업이 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자본기업은 의료 산업에 투자와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 국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뒤쳐지고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면 국내의 중•상위 소득 계층은 점차로 해외 의료서비스를 찾아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및 손주들은 Digital-Native, 제2/3언어에 대한 native로 이미 상당부분 넘어가 있으며, 작금의 해외직구 쇼핑 확산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상기한 예측은 실현 불가한 상상 속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 간 의료혜택 차별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혜택의 차별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공공 의료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 의료 서비스를 비교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체감율이 낮을 뿐입니다. 기존의 체제와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의료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Positive한 측면과 Negative한 측면이 공존하니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Positive한 측면을 극대화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서비스민영화를 기대하는 특정 대기업들의 사전 포석이기만 할까요? 미국에서 한국을 공공의료의 선진 모델로 삼고 있는데, 어렵게 유지해 온 나라의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걸까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신/선진 의료서비스 개발에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마냥 나쁘기만 할까요?

지난날 역사 속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기업에게 무조건적인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반대급부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의적 의료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법제적 보완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범국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전통적 야당은 재벌기업, 대기업의 역기능에만 집중합니다. IT 산업/서비스업에서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이 문제이지 산업발전의 과정에 있어 대기업의 순기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려는 편향된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벌기업은 투자전망이 좋다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무관하게 의료산업에 전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또한 재벌기업이라고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마술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실패에 대한, 생존에 대한 큰 두려움과 리스크 부담을 안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비스업이던 제조업이던 해당 분야의 대기업경기가 휘청하면 그에 따른 중소업체도 따라서 휘청하고, 심지어는 도산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일자리와 경기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으나, 대기업이 성장하면 관련된 중소기업도 더불어 성장하고 나아가 신기술/신서비스/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이 투자대비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신사업들을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검증/안정화되기 이전의 신기술도입을 위한 연구투자를 진행시에 중소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술력과 수익 두 요소를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어오긴 했지만 그것은 개선의 대상이지 대기업 부양책을 금지해야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면, 관련된 국내 중소업체도 해외 진출의 경험을 쌓게 되고, 그렇게 획득한 경험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해외 시장 개척 또한 가능합니다.

대기업 경기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니 그것 위주로 활성화하자거나 대기업 우선의 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의 단기 미래와 장기 미래가 모두 중요하고 둘 중 무엇도 희생, 간과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지원책과 중소기업 지원책 및 부양책모두 중요하고, 동시진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현재의 장단점, 강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발전적 미래의 모색을 위한 출발선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지난날의 새마을운동이나 5개년개발계획 등을 떠올리거나 각종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의 감시 역할과, 성숙도를 과소평가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직전의 총선결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더 이상 과거의 시민이 아니며, 항시 깨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쌓아오지 못한 사회적 신뢰의 부재로 꼭 필요한 정책/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 아깝게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의 논리로 실무, 민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흑백논리와 정치의 파워게임으로만 접근하려하고 시대적 숙제를 외면한 채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신뢰확보라는 우리사회의 숙제는 영원히 미해결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고리를 끊고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 사회와 국회에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앞서간 나라들보다는 늦었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법안이 폐기된다면 국가 산업의 미래는 다시 1년, 2년 표류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IV. 바람직한 입법 방향

법안 원문과 국회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니, 상정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서비스업의 정의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1차, 2차, 3차 산업 분류를 적용하거나 4차 산업혁명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농림 서비스업의 개념과 제조 서비스업의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해서 정의 내리는 것 또한 타당합니다.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되 경우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등, 이권에 관계될 소지가 없는 시민대표가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대국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부처장관들의 각 부처별 서비스산업발전 추진계획 제출에 앞서 공개 설명회를 통한 피드백을 반영토록 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보완책들을 고려하여 보완했으면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국가에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 민영화와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은 대통령령의 사안에서 제외한다.' 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시행이 막혀 있긴 하나,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펼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절절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단순하게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시행되기만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해결안 또한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면 얻는 것도 많았으면 합니다만,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목적성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내용이 빈약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지 못합니다.

법안/법조문을 만들고 해석하는 일이 주업이 아닌지라, 관례상 이런 정도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본 법안을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법으로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이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서비스산업활성화, 가능한가?

김 종 현
(주)위세아이텍 대표이사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SW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과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우리 SW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10%에 불과해서 4차 산업혁명 준비순위로 보면 세계 25위로 미국의 5위, 일본 12위는 물론 대만 16위, 말레이시아 22위에도 뒤쳐져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수립,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피디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IT기술은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핀테크, 원격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구조개편도 속도를 늦추지 말고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통신, 단말기제조 등의 산업은 중국에 고전한지 꽤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90~2000년대 주변 정세에 의해 또는 우리나라의 명석함과 부지런함이 세계에서 선두를 달렸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의 도전에 지속가능에 의문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경제계, 정부에서는 자본이 적게 들면서 고용효과도 매우 높은 SW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왔던 자원도 없고 오로지 머리만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이 SW였고 인터넷 보급이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선진국은 이미 SW가 세상을 지배한다, 먹어치운다 라고 하면서 메인 산업으로 선언하는 분위기도 한 몫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SW를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SW산업을 보면 주문제작에서 솔루션 판매, 그리고 서비스(SaaS)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그 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SW를 구매(소유)하지 않고 사용료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어느 플랫폼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지 않는 제조에서 서비스로의 진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기존산업(건설, 제조 등)에도 SW를 주력으로 가미해서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AI가 주축이 되는 지능정보산업, IoT 등이 각광을 받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SW산업을 이어나가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는 한참 뒤 떨어져 있습니다. 건설과 제조를 기본으로 한 법을 차용하다보니 모든 것이 원가중심으로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SW는 무형의 과정과 결과물인데 이를 원가중심(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W산업의 근간이 되는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태동한 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SW는 특수한 산업분야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제는 단일산업으로서,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일부로서, 다른 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산업(AI)도 제품개발보다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슈가 되는 의료, 교육 분야의 공공성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SW산업 분야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매우 중요한 법이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지능정보산업, 클라우드 등 범국가적으로 기본방향과 표준도 논의되어야 하고 새로이 시장과 고용이 창출되는 분야에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워 기업이 적은 투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산업 고용 인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